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

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기업: 100분의 15 이상

③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11명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

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

조(제4항을 제외한다)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운영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법제와 회계의 운영,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자문·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2.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4.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화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7. 산업재산권 출원 시 우선심사

8.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9.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소전문기업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수소전문기업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보조·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수소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소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수소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수소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수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수소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드는 비용
2. 국내외 판로 확보에 필요한 비용
3.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소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수소전문기업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를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15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수소전문투자회사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1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공채의 매입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착공 및 완공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제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 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규정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

제30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가 상호연계하여 산업발전을 제고하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자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자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수소특화단지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는 수소특화단지의 운영 및 수소특화단지와 관련된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위치
2.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없다.

제35조(시범사업 대상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2. 수소산업 관련 제품의 시제품 생산에 관한 사업
3. 수소경제 시범도시·시범지구에 관한 사업
4. 수소제품의 시범보급에 관한 사업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사유
2.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
3.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제37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
2.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2.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체험관 및 문화공간의 설치·운영
3. 수소산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에 관한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제40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① 진흥전담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서·결산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4. 유통전담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유통전담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5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안전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전전담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8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①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수소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수소산업의 진흥, 유통 및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49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제조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

다)로 한다.

③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1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보존
4.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5. 사업소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6.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2.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3.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나.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42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란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52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소용품 외에 수입하는 수소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정기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정기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

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제54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제55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1.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2.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수소판매사업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수소판매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펌프·회로기관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교체·이전·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제58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을 말한다.

제59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업

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안전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별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부터 제54까지 및 제56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계량기의 검정기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수소경제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소경제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수소경제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50조제4항 관련)

[별표 2] 정기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제53조제1호 관련)

[별표 3]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내용 등(제55조제1항 관련)

[별표 4]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내용, 공개시기 등(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 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제50조제4항 관련)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격으로 본다.
2.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구분관의 자격을 가진다.
3.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확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4.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5.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6.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7.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제53조제1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5조제1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내용	보고방법	보고기한
수소판매사업자	수소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	전자보고 또는 그 밖의 보고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 비고
-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그 밖의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5조제3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	공개내용	공개 시기
가. 수소판매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수소판매사업자가 전일에 판매한 수소의 평균 판매가격	매일
나. 수소판매사업자별 판매가격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2.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방법

- 가. 수소판매가격은 인터넷, 디엠비(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와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나.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공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60조제1항 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1항 제2호	150	220	300
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60조제1항 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4호	20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 다만, 과태료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 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0조제1항 제5호	150	220	300
바.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 판매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 제6호	300 경고 경고	500 300 100	1,000 500 100
사.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60조제2항 제1호	150	220	300
아. 법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60조제2항 제2호	150	220	300
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60조제2항 제3호	150	220	300
차.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4호		300	
카.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5호	100	150	200
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법 제60조제2	150	220	300

제조사업자	항 제6호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7호	150	220	300
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8호	150	220	300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9호	150	220	300
너.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10호		300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60조제2항 제11호	100	150	200